사회봉사활동 운영지원지침

제 정 2012. 7.

1. 사회봉사 활동 추진

(1) 본 봉사단은 건학이념인 자립·단정·독행의 정신에 입각, 글로벌 리더십을 지닌 인재로서 사랑의 실천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봉사의 대학문화를 정립 시킨다.

(2) 사회봉사를 통해 우리사회 주변의 불우 이웃을 돌아보고 미래사회에 힘이 되기 위한 각종 복지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으로 대학의 지성인으로서의 사회성을 함양 시킨다.

(3) 이를 통해 학교 이미지 제고 및 인지도 향상 등 학생회, 학부(전공), 써클(동아리) 등 재학생 단체로서의 사회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 실시함에 목적을 둔다.

2. 사회봉사 활동 운영

(1) 총학생회

- 교내·교외 봉사활동 및 환경운동 캠페인 실시
- 연 2회(학기당 1회) 이상 사회봉사 실시 유도

(2) 학부(전공)

- 각 학부(전공)별 연 2회(학기당1회) 이상 사회봉사 실시 유도

(3) 써클(동아리)

- 각 써클(동아리)별 연 4회(학기당2회) 이상 사회봉사 실시 유도

(4) 매 학기(년) 초 행사 계획 수립 시 적용 실시

(5) 계획 대비 사회봉사활동 실시 결과보고 제출 유도

3. 사회봉사 활동 영역

1) 캠 퍼 스 : 교통, 행사, 규찰, 환경, 안내
2) 농 어 촌 : 의료, 교육, 기술, 생활, 근로
3) 지역사회 : 의료, 복지, 예술, 체육, 교육
4) 기관단체 : 공공기관, 사회복지, 복지시설
5) 국제사회 : 국제단체, 의료, 기술, 교포교육

4. 사회봉사 활동의 인정

1) 상기 단체 및 기타모임의 활동 시 사전 사회봉사단으로 행사 계획서를 제출하며 이를 총장이 승인한 행사
2) 제반 서류

(1) 행사 계획서

- 최소 일주일 전까지 제출 (행사 계획서 양식 사회봉사단 비치)
- 별첨작성 서류 (행사 프로그램 일정, 참가학생 명단)

(2) 행사 후 봉사 실적원 제출

- 본 대학 사회봉사단에서 배부한 양식에 의거 봉사내용 및 실제 활동사진을 3장 이상 동봉하

여 봉사 대상기관장의 직인을 필하여 제출

5. 학교 지원 규정

1) 지원내용 : 재학생 사회봉사활동 참여관련 학교지원제도
2) 지원대상 : 학생회 및 학부(전공), 써클 등 재학생 봉사활동 단, 지도교수의 인정 또는 참석 하에 총장이 승인한 행사활동
   - 계획서 및 실적원 제출 활동에 한 함
3) 지원사항
   (1) 인솔교수 : 지도비 책정 지급
   (2) 참가학생
   - 참가단체 규모(참가학생 수)를 고려 책정 지원
   - 봉사활동 지원기준(단체적용)

분 류	산 출 근 거	비 고
기초지원	- 식대지원 (1인당 5,000원 내외) - 물품지원 (기관 봉사 방문시 위문품 지원)	
차량지원	- 20명 이상 활동 시 적용 (차량 지원이 불가능시 교통비 지원)	
기타 특별지원	- 품목 : 활동복 및 활동 물품 지원, 도시락지원 등 - 적용부분 : 대학 간 연합봉사, 해외봉사, 농촌봉사, 지역환경 캠페인활동 등	

6. 시행일

(1)본 사회봉사활동 운영지원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